[2023 근로 계약서 : 최정환님]

고용주 안중용(이하 '고용주'이라 함)과 근로자 최정환 (이하 '근로자'이라 함)는

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'고용주'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근로계약에 따른 절차와 처리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조 【부서/ 업무】'근로자'의 근무부서/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1. 직 책 및 담당업무 : 매니저
- 2. 회사운용상 필요한 경우 업무조정 및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.
- 3. 업무조정 및 변경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1개월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단,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2조 [급여산정] (2023년 시급 11000.0원기준)

A : 급여내역

- 시급: 11000.0원/시간

- 일일 근무시간: 7.5시간

- 주당 근무시간: 37.5시간

- 월 기본 근무시간: 163시간

- 월 주휴수당 시간: 33시간

B. 휴게시간

- 브레이크 타임: 1.0시간 "휴게시간은 매 4시간 근무후 30분~1시간으로 한다."

C. 월 급여(세전)

- 월간 총급여: 2,156,000원

## 제3조【급여 및 퇴직금】

-'근로자'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1회에 한해 지급할 수 있으며,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.

- 4대보험의 근로자분을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, 차후 근로자에게 실수로 미지급한 급여의 일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. 상계후 남은 금액은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.

## 제4조 【연월차휴가, 휴일, 휴가】

- 근로기준법을 따른다. 다만, 회사업무 특성상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합의한다.

-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이 힘든 경우나,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근로자의 요청 있는 경우는 사전 합의 후 발생한 연차를 급여와 함께 1/n으로 합산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 [근로계약의 해지]

'고용주'은 '근로자'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보호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범죄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 때

2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.

3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동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위협, 기강을 문란케 한 경우.

4. 신체 / 정신상의 이상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서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.

5. 기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.

6. 제 1 항에 해당되는 때는, 적발 즉시 해고 / 해지 할 수 있다.

'근로자'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는'고용주'에게 30일전에 사직서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【손해배상】

'근로자'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'고용주'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/권고사직 할 수 있으며, 이와 별도로'근로자'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【기타】

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며, 계약조건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 이상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, '고용주'과'근로자'이 각각 날인한 후 각1부씩 보관한다. 다만, 전자문서로 계약서의 SNS 통지도 가능하며, 통지된 근로계약서는 1년간 전자 저장매체에 보관한다.

계약시작일: 2023년 05월 01일

계약종료일: 2024년 04월 30일

고용주 : 안중용 (인/서명)

근로자: 최정환(인/서명)